

제147회(임시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부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목 차

1.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면
2. 서울특별시종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 심사보고서	2면
3. 서울특별시종로구장애인동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9면
4.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면
5.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11면
6. 도시환경정비(서린)구역변경지정안 의견청취 결과보고서	14면
7.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관리기금조례안 심사보고서	16면
8. 구정질문 보충답변서	18면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5. 2. 18.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1. 審査經過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년 2월 7일 · 종로구청장 원안 제출

나. 회부일자 : 2005년 2월 11일 원안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47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2005. 2. 18) 상정 ·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박 종 인)

가. 제안이유

종로구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구정참여 및 구정홍보를 위해 각종 홍보행사(이벤트)등을 실시함에 있어, 선거관련법 저촉여부 논란을 사전 차단하고자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종로구 홈페이지 내에서 홍보행사(이벤트)를 실시하는 경우 참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는 내용 신설 (안 제16조)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박 성 열) —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

4. 質 疑 및 答 辯 要 旨 (생 략)

5. 討 論 要 旨 (없 음)

6. 修 正 案 의 要 旨 (없 음)

7. 審 査 結 果 : 원안가결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

서울특별시종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5. 2. 18.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 査 經 過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년 10월 7일 · 종로구청장 원안 제출

나. 회부일자 : 2004년 10월 7일 원안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46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시민행정위원회(2004.10.15) 상정 · 의결(보류)

제147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2005. 2. 18) 상정 · 의결(수정)

2. 提 案 說 明 의 要 旨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황 의 진)

가. 제안이유

○종로구 발전에 기여한 내·외국인에게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근거를 마련 하고자 우리구 명예구민증수여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안 제2조제1항)

- 타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중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 구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교류증진, 통상 협력 또는 서울특별시종로구민과의 우호증진 등에 공헌한 외국인
- 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외국인

○후보자의 추천은 구청장, 구 의원 및 공공단체의 장, 10인 이상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10인 이상의 종로구민에게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함.(안 제3조)